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15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김용태・이성권・고동진
조은희・김대식・김성원
서천호・김승수・윤한홍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초저출산으로 인한 전체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이주배경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초・중・고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음.

특히,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3만 3,622명으로 전년 대비 21% 급증했고, 지난 5년 사이 2.7배나 증가하는 등 초등학교를 넘어 중・고등학교 전반으로 이주배경학생의 분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이주배경학생 증가 현상이 더 이상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교육 현안이 되었음을 의미함.

그러나 현재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교육부, 성평등가

족부, 법무부 등에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정보 연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교 밖으로 밀려나거나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및 중도입국 자녀의 문제가 부각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과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의 생활 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 문제를 넘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와 함께 중점지원학교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사회통합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특별학급 설치·운영, 한국어교육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학교 입학 전에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중점지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 연수를 실시하고,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지원 및 심리·진로 상담, 보호자에 대한 교육,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사회통합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이주배경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보호·교육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이주배경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방안
4. 중점지원학교 운영 및 지원방안
5. 지역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방안
7. 그 밖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이주배경학생 교육지

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교육 진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취학 대상 이주배경학생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지원에 관

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보호자가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통역·번역 지원, 입학 신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의 이주배경, 언어 수준 등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입학 안내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국어능력진단검사)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이하 “한국어능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주배경학생등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및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주배경학생등에게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한국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한국어능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이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한국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와 교원의 추천,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주배경학생등을 선정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위탁기관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능력, 학교 생활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기술과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의 설치·운영 및 한국어교육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 전 한국어교육 실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이주배경학생등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 이해·소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배경학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결과를 학년 배정 및 학습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등 및 그 보호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또는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학생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 한국어교육 지원의 내용 및 제공주체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하여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점지원학교의 지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하 “중점지원학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및 조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점지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중점지원학교의 지정 기준, 운영 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중점지원학교 및 교원,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민간단체,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지원 및 심리·진로 상담,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이주배경학생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활용 및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소관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